

[붙임 3]

생활체육교실 출강 약정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생활체육교실 ()출강강사"는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이하 "생활체육교실 ()출강강사"를 "출강강사"라 한다.

제1조 본 약정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좌 출강에 적용한다.

제2조 (강좌명) "출강강사"는 "중구청장"이 개설하는 생활체육교실의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한다.

제3조 (강사료) 강사료는 월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당(24,000원 /35,000원) 강사료에 출강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익월5일까지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강좌운영)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사항을 정한다.

1. "중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 이용 수강생의 감소로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강좌를 폐강할 경우 또는 강좌 시간, 요일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출강강사"는 "중구청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강좌 폐강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즉시 "중구청장"은 "출강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또한, "출강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강할 수 없을 때는 1개월전에 "중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강강사"는 "중구청장"이 실시하는 강좌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차원의 공익적 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여야 한다.

4. "출강강사"는 수강생에게 교육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중구청장"의 양해없이 부대비용을 요구하지 못한다.

5. "출강강사"는 강의 중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강좌 운영 중에 본인과실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출강강사"는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출강강사"는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제출) "출강강사"는 신상과 강좌계획 등 강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약정기간)

1.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2. 각종 선거나 다른 피치 못할 사유로 중간에 휴강할 경우 "중구청장"은 "출강강사"에게 사전 1개월전 또는 사유발생 즉시 통보하고 약정 기간을 조정한다.

3. 약정기간 종료 후에는 "중구청장"과 "출강강사"의 쌍방간 합의하에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1호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강강사"가 강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중구청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구청장"은 "출강강사"와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분쟁의 조정)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이 협의한다.

2016년 월 일

"중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생활체육교실 ()출강강사"

주소 :

성명 : (인)